

제2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자인영 의원 발의】



2025. 8. 26.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566호로 2025년 8월 14일 차인영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인공지능을 행정 및 지역사회에 활용하여 행정 효율성과 구민 삶의 질을 높이고, 공익적 활용과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 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나.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다.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 제4조)

라. 종합계획 수립·시행, 실행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제6조)

마. 추진사업, 인공지능 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7조 ~ 제8조)

바.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촉 해제, 위원회의 운영(안 제9조 ~ 제11조)

사.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12조 ~ 제13조)

아. 포상, 시행규칙(안 제14조 ~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5.8.14.~2025.8.21.)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취지

- 행정안전부는 2024년 민간기업과 협업으로 ‘인공지능(AI) 행정 지원 서비스¹⁾’의 시범 운영을 하였으며²⁾ AI 시대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 기반 구현, AI 기반의 행정업무 적용을 위한 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목적으로 2025년 예산에 159억을 편성한 바 있음.
- 아울러, 2025년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라 함)이 제정되었으며 2024년 6월에는 경기도에서 최초로 인공지능 기본 조례를 제정한 바 있음.
-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산업의 개발 방향과 기본원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본 조례안은 이러한 흐름에 따라 우리 구(區)의 인공지능 기술의 공익적 활용 기반 조성 and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조	제 명	내 용
제1조	목적	인공지능 정책 기본사항 수립
제2조	정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상의 정의 규정 준용

1) 인공지능 행정 지원 서비스: 문서 요약, 문서 초안 작성, 법령·지침 정보 검색, 정보공개 민원 관련 공무원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정부 전용 인공지능 서비스

(출처: “최초의 정부 전용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범서비스 시작”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4.6.12.))

2) (출처: “행정안전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_인공지능 활용 혁신촉진 등에 중점 투자”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4.9.5.))

제3조	구청장의 책무	AI 행정서비스 확대, 공익적 이용 촉진, 산업 협력 강화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 제외 본 조례 따름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정책 방향·재원조달·윤리교육·산업 육성 등 포함 계획 - 3년마다 수립
제6조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가능 - 매년 수립
제7조	추진사업	행정시스템 구축, 교육·경진대회, 인재양성, 산업 협력 등
제8조	인공지능 심의위원회의 설치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 부구청장 - 부위원장: 호선 - 2년 임기, 한차례 연임 가능 - 간사: 인공지능 업무 담당 팀장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등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	사무의 위탁	관련 법인,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 가능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양자 간 또는 다자간 국·내외(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의 협력 가능
제14조	포상	공로 인정자에 대한 표창 가능
제15조	시행규칙	필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 동 조례안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목적, 정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종합·실행 계획, 추진사업, 심의위원회, 사무의 위탁,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아 총 1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상위법인 「AI 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공지능 정책, 계획 수립 의무와 지원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제정 조례안에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안 제5조 및 6조), 추진사업(안 제7조), 협력체계(안 제9조) 등을 규정한 것은 상위법률과 부합함.

- 또한 「AI 기본법」 제6조³⁾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가지는 바, 우리 구(區)의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며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기관과의 수립 주기를 맞추어 정책 일관성을 확보한 것으로 여겨짐.

○ 종합의견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산업은 현재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 분야(자율주행 자동차, 의료, 금융, 제조업 등)에서 AI 기술을 채택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음.
- 본 조례안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의 행정 전반에 도입·활용을 위한 규정들을 명문화하고 있어 향후 AI 기반 민원·행정 서비스 도입으로 인한 처리 속도 향상과 맞춤형 행정정보를 제공으로 인한 정책 품질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며, AI 관련 기업·대학·연구소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점 등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있으므로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 반면, AI 기술의 발전으로 사생활 침해, 정보격차 심화, 관련 기술 오남용, 고용 환경 변화로 인한 일자리 소멸 등의 문제점이

3)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변경 및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두되기도 하는 바, 본 조례에서는 안전한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인공지능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합계획 수립 시에도 인공지능 사업자 및 구민 대상으로 윤리 교육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음. 이는 해당 산업의 신뢰성 및 효율성 제고와 함께 안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장치를 둔 것으로 여겨짐.

참 고 자 료

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사회·경제·문화와 국민의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변경 및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